

2024년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14:00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PROGRAM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14:00

□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20	<인사말 및 기념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사말 : 이상경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기념촬영	▪ <사회> 김명기 사무총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4:20~ 15:40	<주제발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주제발표 1.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보국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2.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좌장> 정 훈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40~ 16:00	휴식시간	
16:00~ 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윤철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정훈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영진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석천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상은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이재인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이진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김기원 회장/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이상연 국장 (법률저널 편집국)	▪ <좌장> 송관호 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30	폐 회	

Contents

인사말 및 기념촬영

인사말	1
이상경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제발표

[주제발표 1]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5
서보국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2]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	23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토론 1] 최윤철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9
[토론 2] 박정훈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5
[토론 3] 정영진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3
[토론 4] 장석천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9
[토론 5] 정상은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73
[토론 6] 이재인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77
[토론 7] 이진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81
[토론 8] 김기원 회장/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87
[토론 9] 이상연 국장 (법률저널 편집국)	97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인사말 및 기념촬영

인사말

이상경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인 사 말

이상경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상경입니다.

세상을 퐁퐁 열어볼게 만들었던 추위가 가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법전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발표문을 준비해 주신 발제자 두 분 원장님을 비롯해 좌장 및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이후 올해로 1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배출한다는 담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의 틀을 바꾼 대변혁이었고,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현재 법전원 출신 법조인 수가 2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기준으로도 이미 전체 변호사의 과반수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법치주의의 기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영역에 진출하여 4,000여 명에 이르는 사내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소외 계층 및 무변촌 지역에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조계의 문턱을 낮춘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하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Computer Based Test)로 성공적으로 시행된 만큼, 변호사 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 등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결원보충제도의 한시적 실시, 불합리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법학교육위원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으로서 법조인 양성과 맞물려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져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이제는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루게 될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과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이란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뜨거운 쟁점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맹목적인 교육과 평가를 벗어나, 수험생의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덜고 다양한 분야의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띤 토론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뒤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과 같은 공론을 통해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법과 대안을 찾는 것은 법전문원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교육부, 기타 유관기관의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일 것이라는 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시험 제도에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잘 개선되어 법전문 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하고 법전문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심포지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 상 경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서보국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서보국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선택형 문제유형은 ‘객관식’으로,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유형은 ‘주관식’으로 표현하고, ‘전문화과목’은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인 선택과목 7개(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경제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를 포함하여 그 외의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 과목(도산법, 사회보장법, 인권법, 외국법, 법경제학, 금융법, 은행법, 소비자법, 엔터테인먼트법, IT법, 방송통신법, 안보법 등)들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전문화과목 이외에 기초법 과목은 별도로 분류한다.

I 서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된지 15년이 지났다.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사건¹⁾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²⁾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정착단계에 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공론화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사시험법 제1조와 제2조의 입법목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분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2009년 이전의 논쟁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객관식 문제의 점수가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3학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과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비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 외에 현재 전문화과목 강의의 폐강 현상과 변호사시험과의 불일치 문제는 이미 10년이 넘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행 시험유형의 집중화부담, 5회 탈락자의 증가 및 전문화과목 교육과

1)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 2017.12.28. 2016헌마1152, 2017헌마15(병합), 2017헌마300(병합) 결정.

시험의 부실화라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객관식과 주관식 변호사시험의 이원화를 통해서 실효적인 부분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II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시험유형(객관식/사례형/기록형)의 5일간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로스쿨 1학년은 주로 민사법/형사법/공법의 기본과목들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학년은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심화과목과 소송법, 실무과목 및 기록형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의 경우 연습과목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법전협 변시모의시험을 3번(6월, 8월, 10월) 치른 후 다음 해 1월에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험생들은 3학년 1학기 또는 여름방학부터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기 시작하여 변호사시험을 치르기까지 준비시간을 30~50% 가까이 할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사법과 형사법의 객관식 문제에 80%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법(헌법/행정법)과 전문화과목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물론 법조실무의 영역에서 민사법/형사법의 실무활용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그만큼 더 많은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내신 상위권 학생이나 공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이 불안해질 정도로 상대평가의 합격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이미 기존의 문헌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³⁾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시험과목이 아닌 기초법 과목이나 전문화과목의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이미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래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5~10년 이내에 폐강의 문제로 전임교원이 없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에서는 민사법/형사법/공법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만 남게 되고, 로스쿨로의 전환이라는 취지는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예비시험의 부활 등의 쟁점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로스쿨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유형의 집중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

3) 백경희·장영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84호, 2019, 274면.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종합적 법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의 문제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 법전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규정으로 졸업 전에 통상 시험을 보는 경우를 상정하여 졸업예정자부터 5년 5회를 적용한다. 그 외에 동조 제2항에서 시험응시 이후에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⁴⁾

통계적으로 지금은 매년 250~300명 정도(이 중에서 약 200명 정도가 마지막 시험에 응시하고 있음)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시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법학전문석사학위자의 숫자가 예전의 사시낭인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논의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이나 법학교육기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로스쿨에서 3~5년, 시험 준비기간 5년을 합해서 8~10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최종불합격자에게 법원/검찰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등의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관 특채시도⁵⁾ 등의 노력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⁶⁾

따라서 법학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과 맞지 않는 학생에게 입학 이후 몇 년 안에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대 후반까지 다른 진로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8~10년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시험 준비에 묶여 두기보다는 입학 이후 1~3년 안에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는 이미 작년 12월 심포지움에서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고 그 범위를 줄여서 2학년 진급시험 및 유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이 결정되며 유급의 기준은 학교별로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유급된 학생의 숫자만큼 1학년 학생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전체 총원은 동일하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각 법전원이며, 진급과 유급의 책임도 마찬가지이다.

이와는 달리, 각 법전원별 유급 결정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예전의 사법시험처

4) 병역의무기간 외에 임신·출산·육아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저출산시대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 "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법률신문 2023년 8월 25일, <https://www.lawtimes.co.kr/news/190666>.

5) 기사, "경찰 '변호사 시험 5탈자' 특채 7 → 8급 내려 재검토", 문화일보 2023년 6월 8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0801071021227001>.

6) 이창현,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률신문 2021년 5월 6일, <https://www.lawtimes.co.kr/news/169834>; 한애라, "오타자, 이대로 좋은가", 법률신문 2023년 5월 1일,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7185>.

럼 변호사시험 객관식 시험의 점수를 기준으로 1700~1800명 정도로 진급 제한을 두는 것은 자격시험화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10년을 낭비하는 5탈자의 숫자는 그대로 200~300명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3년의 유급자로 제적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나 각 법전원별 유불리의 입장으로 인해 제도개선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기준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5년 5회의 응시제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객관식 시험을 통해 적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금 더 늦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응시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의과대학처럼 로스쿨 2~3학년의 학사관리가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전문화과목(선택과목) 시험의 응시생 편중과 로스쿨 교육의 부실화

발표자는 작년 12월 심포지움에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의 문제점과 로스쿨 소속 전문화 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감소 및 부재라는 문제점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총 7개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생의 특정 과목 편중현상이다. 제3회 시험 이후부터 제12회 시험까지 2,500~3,600명이 넘는 전체 응시생 중 국제거래법(40~50%), 환경법(20~30%), 국제법(5~12%) 3과목에 82% 비중으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은 모두 합쳐도 10%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시험부담의 유불리와 표준점수제의 유불리 때문이다.

시험부담의 유불리는 민사법/형사법/공법 과목에 대한 준비시간도 부족하다는 점과 특별법을 배우는 시기에 객관식 시험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표준점수제의 유불리로 인해 전문자격사가 존재하는 과목(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에서 신규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편중현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화과목과 기초법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숫자가 모든 영역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법학과목을 제외하고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 7개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로스쿨 전체 총원이 2012년에는 약 230명 정도였으나 2023년 말에는 14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⁷⁾ 아이러니하게도 50%의 응시생이 선택하는 국제거래법 과목에서조차 담당 전임교원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3년의 과정에서 민사법/형사법/공법을 제외한 전문화과목이나 기초법학은 0~2개를 수강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주요 시험과목 이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규강의 15주

7) 서보국,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제도 개선방안”, 〈로스쿨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주최(2023.12.19.), 39면 이하 ‘2. 선택과목 강의를 맡은 전임교수 현황’ 참조(본 발표문 마지막에 별첨자료로 첨부).

와 사설학원강의 5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명하다.

따라서 기초법학과 전문화과목의 강의개설이 쉽지 않으며 폐강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로스쿨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결국 신입교원을 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문화과목 전임교원의 정년이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14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강의와 교육 및 출제위원도 모두 없는 상황에서 전문화과목 시험만 남게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래의 박스자료는 지난 12월의 심포지움에서 전문화과목의 문제점과 로스쿨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발표문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⁸⁾

전문화과목(선택과목)에 대한 로스쿨 교육 내실화 방안

- 전문과목 교육부실화는 사법시험(예비시험) 부활주장의 주요 논거
-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의 소송대리 주장 논거
- 표준점수제로 인한 전문자격사 과목의 신규진입 차단
- 전문화과목에 대한 정규과목 수강 없이 단기특강으로 수험준비 만연
- 졸업생 이수학점 중 민/형/공 아닌 과목은 0~2과목에 불과함
- 전문화과목 전임교원 감소중. 5년 뒤 강의/출제위원 없이 시험만 존재
- 따라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보다 로스쿨 내 전문화과목 강의개설이 더 시급한 문제이며, 전임교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1단계: 졸업요건에 일정 선택과목(기초법/외국법 포함) 이수 기준 도입

2단계: 선택과목 수강시 **P/F 평점** 도입(장학금 선발기준 보완 병행)

--> 법령개정 없이 **학칙개정과 로스쿨 인증평가 개정으로 즉시가능**

3단계: 변호사시험(전문화과목) / 학점이수제 중 선택가능성 부여



통합형(객관식/사례형/기록형)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로스쿨교육의 학원화 경향 심화 방지와 예비시험(사법시험)의 부활 등의 우려, 전문화과목 폐강 등의 로스쿨 교육 부실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개선은 로스쿨 내신 평가나 교육내실화 보다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해야 가능하다. 전문화과목 부실화 등은 학생들이

8) 최근의 문헌으로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법학연구 제35권 1호, 2024.2., 충남대 법학연구소, 463면 이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이 상향되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합격률과 합격기준의 문제와는 별도로 시험을 5일 동안 객관식과 주관식(사례형과 기록형)을 모두 한 번에 보기 때문이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본질적 개선방안을 통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우선적 고려사항으로서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

아래의 변호사시험법을 확인하여 법률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과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

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변호사시험법을 보면 법률의 개정 없이 현행 법률에서 객관식 시험을 분리할 수는 없다. 모든 시험 유형을 5일간 집중하여 치루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법 제5조제1항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제외하고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시험일에 객관식 시험을 분리해서 보더라도 3개월을 벗어나기 때문에 법률개정사항이다.

그 외의 문제는 객관식 시험의 범위와 주관식 시험의 범위가 동일해야만 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법 제9조제3항에서 출제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목별로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동일한 범위로 정하고 있지만 차후에 과목 내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법 제10조제2항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산한 각 과목의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과목 과락을 결정하고(전문화과목은 주관식 점수만 계산), 모든 과목을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분리 실시된 객관식 점수를 별도의 유급기준으로만 사용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사용

하지 않으려면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 없이 분리실시된 객관식 시험 점수를 유급기준으로만 사용하고 변호사시험에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다면 아래의 시행령 제8조제2항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 의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환산비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비율을 3배 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객관식의 합격기준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 선택형(객관식) 40문제의 배점이 아래의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에서 보듯이 100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1문제당 2.5점으로 계산되지만, 40점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1문제당 1점으로 40%의 비중으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시행령 별표3의 환산비율도 300%에서 600%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한 상황이기에 실현가능성은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총점
배점(만점)	700	400	400	160	1,660
선택형	175	100	100	-	-
논술형(사례형)	350	200	200	160	-
논술형(기록형)	175	100	100	-	-
과락기준	280	160	160	64	-

단,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하나가 40% 이상이면 면과락

(변호사시험은 기본과목의 경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채점점수가 합산되기 전까지는 과락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음)

2. 객관식 시험의 분리 실시(5탈자 문제 개선 병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부담은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시험 일정에 최대한 가깝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식 시험 준비는 기출문제와 최신판례의 결론과 중요이유를 암기해야 하는데 망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2학년부터 준비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최대한 3학년 이후부터 객관식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늦어도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마지막으로 공법 객관식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정상적인 루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로스쿨 교육의 부작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식 시험의 비중을 낮추거나(시행령 개정사항),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은 분리할 필요(법률 개정사항)가 있다.

3. 분리실시 가능한 객관식 시험 시기

가. 법조윤리시험일(7월)에 3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먼저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여 6개월 정도 앞당기는 방안으로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수험

생이 치르는 방식이다. 시험집중 완화의 의미가 있으며 전국의 로스쿨 1학년이 법조윤리 시험을 치르는 날에 동시에 3학년이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기에 행정적으로 시험장 관리의 문제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객관식을 분리하여 6개월을 앞당기게 되면 1월의 본시험에 대한 부담은 5일의 시험에서 3일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객관식과 주관식의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현재의 점수제에서는 앞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합격기준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문제와 전문화과목의 폐강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로지 시험집중의 부담이 완화되어 수험생들의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장점만 존재한다.

나.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2학년을 마치고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범위의 변경은 필요 없다.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시험범위를 이미 공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준비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각 과목별 객관식 시험범위를 줄여줄 필요는 있다. 헌법/민법/형법은 현재와 같이 모두 포함하지만, 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날(또는 당분간 그 다음날)에 2학년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장 문제와 행정인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CBT시설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조금 더 공간활용에 있어서 자유롭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 및 관리의 문제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지 않다. 선택형 시험 출제위원은 동일하게 입소하여 출제를 하면 되고 변호사시험 1일차부터는 3학년 등 본시험 수험생 3천명이 CBT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날에 전국의 1학년 약 2천명이 각 학교별 시험장에서 선택형 시험을 보면 된다. 물론 시험범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2년의 경과기간 동안에는 2개의 시험이 각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기존 시험에 탈락한 N시생들에게 기존의 시험방식을 5회 동안 유지할 필요도 있다. (물론 불리한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새로운 시험방식을 2년의 경과기간 후에 전면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법조윤리시험일에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1년 더 분리가 되는 것으로서 교육내실화의 효과는 조금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2학년에서 3학년으로의 학년유급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객관식과 주관식의 환산비율을 변경하고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은 가능하지만, 학년유급으로 사용하기에는 로스쿨에서 5년의 기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다.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객관식 유급시험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변호사의 자질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는 사례형과 기록형으로도 충분하다. 이 경우 1학년 과정

에서 현재의 객관식 시험 범위는 너무 넓다. 따라서 1학년에서 학습가능한 내용으로, 즉 헌법(헌법사 제외), 민법(가족법 제외), 형법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법/상법/소송법은 객관식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유급시험을 통해 계속 문제되어온 '5탈자'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적성에 맞지 않는 로스쿨 학생은 최소한 8년의 기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시험을 통해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축소하여 본인의 적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시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칙 개정과 로스쿨 인증평가로 충분히 자율규제가 가능하다. 유급시 1학년 과정을 반복하여 진급시험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5탈자와의 차이점은 로스쿨 입학 이후 10년 뒤에 5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 2년 뒤에, 즉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법학시험에 맞지 않는 적성을 확인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1학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치르고 있는 법조윤리 시험을 변호사시험 기간의 마지막 날에 객관식 시험과 통합하여 볼 수 있게 한다면 경비도 줄어들면서 법무부와 로스쿨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의 환산비율의 개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행령 별표3을 개정하여 현재의 300%에서 600% 또는 750%로 주관식의 비중을 높여준다면 분리실시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분리된 객관식 시험의 시기를 1학년 말이나 2학년 말로 앞당기고 그 비율을 변경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되며 각 학교별로 학년유급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개정안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규정과 같이 객관식 시험 점수도 40~50% 과락만 있고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래의 응시횟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객관식 시험의 과락기준 또는 유급기준을 상향하여 진급자의 숫자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졸업예정자가 치르는 주관식시험은 의과대학의 국가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5. 응시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 개정

분리된 객관식 시험에 대한 과락 제도와 각 학교별 진급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객관식 시험에 대한 응시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법전원 학칙에 분리 실시된 객관식 시험 점수가 과락에 해당하거나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학년유급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로스쿨 인증평가에 포함시킨다면 응시횟수의 제한 규정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각 대학교의 학칙에서는 동일하게 학년유급이 2회 이상이면 제적대상이기에 변호사시험법을 적용할 필요 없이 학칙으로 응시제한이 가능하다.

유급제도와 연결하지 않고 환산비율도 조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객관식 시험만 분리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어느 시기로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응시 제한 규정과는 관련성이 달라진다. 정책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이미 보고서 객관식 점수를 취득했다면 1회가 시작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관식 시험까지 치르고 나서야 1회로 인정할 것인지를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학연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분리된 객관식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나온 다음에는 더 이상 객관식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로서 또는 졸업자로서 주관식 시험까지 치른 경우에 1회로 인정하여 5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법률개정을 하여 객관식 시험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정하며 응시 횟수 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변호사시험 1회 응시로 인정하여 횟수 제한 규정의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장단점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법률개정을 통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간단한 법률개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실효적인 단기간의 개선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별첨 자료]

※ 선택과목 강의를 맡은 전임교수 현황('23년 12월 심포지움 발표자료)

- 학교별 1번째 칸 2012년, 2번째 칸 2019년, 3번째 칸 2023년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강원대 (환경)	김한택	홍석모	전형배*	김석환	정진근 신동룡	한만주	박태현
	오시진		김희성			이혁*	박태현 함태성 박시원
건국대 (부동산)	박병도	X	조용만	김영우	정연덕	정해방	이계수*
			조용만 최윤희	X		X	
경북대 (IT)	김민서 채형복	정형진	윤진기 이달휴 문무기	이동식*	배대현 최승재	윤진기 신영수	김창조*
			이달휴 문무기		배대현 차상욱	신영수	
경희대 (글로벌기업)	이영준 최승환	X	강희원	이준규 김두형 황남석*	X	정완	박균성* 전경운*
	최승환			X			김두형 황남석*
	최승환 백범석						
고려대 (GLP(국제))	강병근 박기갑 박노형 이재형	김정호* 신창섭	하경효* 박종희 박지순	신호영 박종수*	안효질 조영선	유진희* 이황	김연태*
	강병근 이재형	신창섭	박종희 박지순				
동아대 (국제상거래)	전순신 심영규	김용의 최성수	송강직	X	이점인* 최상필	김영호*	김세규* 최우용*
	심영규	김용의 최성수 신충일			최상필	X	최우용*
		최성수 신충일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박배근 박찬호	이세인* 손태우*	권혁	이정란	계승균 조현래	정대근* 주진열	이기춘*
					계승균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강명수		
					강명수	주진열	
서강대 (기업(금융))	오병선	왕상한*	김재훈	김영심	박준우	홍대식	이은기*
	X		심재진	X			X
서울대 (국제, 공익·인권, 기업금융)	정인섭 이근관 Folz	석광현 장승화 박준	이철수	이창희 윤지현	정상조 박준석	권오승 이봉의	조홍식
	이근관 이재민	석광현 장승화 박준 최봉경*				이봉의 임용	조홍식 허성욱
	이근관 이재민 원유민	장승화 최봉경 이종혁	최석환				
서울시립대 (조세)	김대원 이창위	강정혜*	최창귀 노상현	김완석* 박훈* 이재호	전민기* 구대환	X	X
			노상현	이재호 양인준*	구대환		
				양인준* 김범준		박세환*	
성균관대 (기업)	나인균 성재호	장준혁	김홍영	이전오* 이준봉	정치호	정호열*	김형성*
	성재호				정치호 이해완	정호열* 이선희*	강현호*
	성재호 이길원			이준봉		이선희*	
아주대 (중소기업)	소병천	윤성승*	이승길	최원	강현*	오승한	소병천*
					강현* 한지영*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김대순 김준기* 박덕영*	안강현*	이상윤	박정우 이종교	나종갑 남형두	신현윤*	X
	김준기* 박덕영*		X			신현윤* 최난설현	
	박덕영* 이기범					최난설현	
영남대	이환규	X	조임영	최성근*	이동형*	심재한*	김현준*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공익·인권)	이용호	권종걸					
	이용호	이성원*	X				
원광대 (의·생명과학)	김성원	이상진	이희성	윤현석	정태호 김은진*	윤현석*	유권홍
	X	최영란	X		김은진*X		X
이화여대 (생명의료, 젠더)	최원목 김영석	김인호*	이승욱 박귀천	옥무석*	전효숙*	정재훈*	석인선*
				한만수*	신승남*		
				옥무석*	신승남*		
				임재혁*	이원복		
인하대 (물류, 지적재산)	김현수 이석우 정찬모	이경규*	김인재	김의석* 김영순*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손영화*	채영근*
		김천수 김린*	김인재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이석우 정찬모	김린*	X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김원오		
전남대 (공익·인권)	장신	신창선*	조상균	김재승	김원준 김정완	신창선*	정훈*
	장신 최혜선	최혜선*			X	장윤순	
	최혜선				류시원		
전북대 (동북아)	배정생 이세련	송양호*	김영문 김성진	한상국	최동배	박수영*	유진식*
			김성진	X			
제주대 (국제)	김부찬 김여선	오수용*	고호성*	X	X	고호성*	한삼인*
	김여선 오수용	윤은경*			문건영*		김은주*
	김여선 최지현	조은희*	오대영			박준선*	
중앙대 (문화)	박원석 이성덕 제성호	정홍식	유성재	김성균	이규호	조성국	이상돈
	박원석 이성덕						김중권*
충남대	이재곤	X	김소영	서보국*	최형구	X	최인호*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지적재산)	이길원		김기선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이재곤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도경옥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충북대 (과학기술)	이영진	윤남순	노병호	X	신혜은	이동원	최선웅*
	X	X	김태현		윤종민 신혜은		이비안*
한국외대 (국제)	이장희	박영복*	이정	X	최철	김동훈*	최승필*
	조정현		X				
한양대 (공익인권 및 거버넌스, 지식문화 및 과학기술)	이재민 최태현 Reid	김선국	박수근 강성태	오윤	윤선희 김병일 박성호	김차동* 이호영	김홍균
	최태현	이종혁	박수근 강성태		윤선희 김병일 박성호		
	김성원	X	강성태 고수현		김병일 박성호		X
2012.3.	49	26	33	31	40	28	26
2019.12.	40	29	32	26	40	26	26
2023.12.	36	23	25	24	39	25	22

* 선택과목 1개와 공/민/형 중 하나를 함께 강의하거나, 2개의 시험 선택과목을 함께 강의하는 경우 또는 소속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경우

(위 표는 발표자가 2012년 법학교수회 수첩의 전임교수 전공소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수첩의 전임교수 전공소개 및 2023년 12월에 각 법전원 홈페이지 전임교수 전공소개 및 최근 2년간 개설강좌 등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

권건보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23년 4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한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에서 일부 응시생들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시험방식을 현행 종이 기반의 시험방식(Paper Based Test, PBT)의 필답형 시험과 과정 평가형 외부평가에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Computer Based Test, CBT)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무부는 2012년 제1회 시험 이후 2023년 제12회 시험까지 사례형과 기록형의 논술형 시험을 종이 기반 방식(PBT)의 필답고사로 실시해 왔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각각 2시간씩 연이어서 도합 4시간 동안 지필로 답안을 작성해야 했다. 그리고 민사법의 경우에는 사례형 시험을 3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3시간 동안 답안을 지필로 작성하여야 했다. 수험생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방대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려면 상당한 체력의 소모가 따르게 된다. 심지어는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수험생 또는 필기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체가 악필인 수험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답안지에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수험생이 갖춘 진정한 실력을 있는 그대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필기의 속도나 필체의 식별 정도 등에 따라 시험의 당락 여부가 결정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익숙한 요즘의 세대로서는 필기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에서도 논술형 시험은 CB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많아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024. 1. 9.부터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국가시험 중 최초로 논술형 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을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력 외의 요소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험의 채점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부터 합격자 결정기준을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 규모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호사시험제도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합격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변호사단체 측과 로스쿨 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당일에도 최종 합격자의 수를 놓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 바탕의 격론이 벌어진다. 언제까지 합격자의 규모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도록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살펴본 후, CBT 시험 방식과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절차에 대해 고찰하고, 이어서 합격자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과 변호사시험의 성격

1.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 과정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제도는 우수한 법조인력의 선발·양성이라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으나, 일회적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사법시험은 그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키고 고시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의 수나 실력과 무관하게 정해진 소수만 합격할 수 있는 선발시험제도로 운용됨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간 수험생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소위 ‘고시낭인’이라는 청년인재의 낭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이 교육제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 지식만 습득하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사법시험제도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법률가, 즉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충분한 인문교양을 쌓은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¹⁾

(2)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

2004. 10. 4.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여기서 일본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의 법학사 과정을 폐지하도록 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예정)자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 7. 27.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로스쿨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로스쿨 개원 직후인 2009. 5. 28.에는 「변호사시험법」 제정되었으며, 2012. 1.에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2. 변호사시험의 성격 : 순수한 자격시험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통해 소위 ‘고시낭인’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를 확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전문화·대중화하며, 사법연수원 중심의 폐쇄적인 기수문화를 일소하는 등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로스쿨제도와 결부된 변호사시험제도는 그 설계 당시부터 기존의 정원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과 다르게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자격시험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법조인 자격시험은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²⁾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³⁾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8. 1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배포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설명자료」라는 자료집(26면)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법시험 3차 시험과 같은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8. 11.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담당검사도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변호사시험은 선발 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이라며, 향후 변호사시험은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09. 3. 발행한 ‘로스

1) 현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303-304; 현재 2016. 3. 31. 2014헌마1046, 판례집 28-1상, 531, 535 등 참조.

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IV), 법원행정처, 2004, 571면 참조.

3) 위의 자료집, 418면.

쿨과 변호사시험, 선진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5면에서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라고 하였으며, 동 책자 10면에서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2. 4. 24. 변호사시험을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변호사시험법 제1조), 이는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시험제도가 설계될 당시부터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사법시험처럼 일정 수의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선발하는 방식의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고, 일정한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제도는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합격자의 수도 그러한 자격 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원만 합격할 수 있는 선발시험제도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더욱이 사법시험에 비하여 시험의 과목과 유형이 늘어나고⁵⁾ 출제의 범위도 확대되어⁶⁾ 수험생들의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었다. 이는 자격시험을 지향하는 변호사시험의 성격에 걸맞지 않는 것이고,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기 어렵다고 본다.



CBT 시험의 방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방법과 절차

1. CBT 방식에 의한 논술형 시험의 실시

(1) CBT 방식의 도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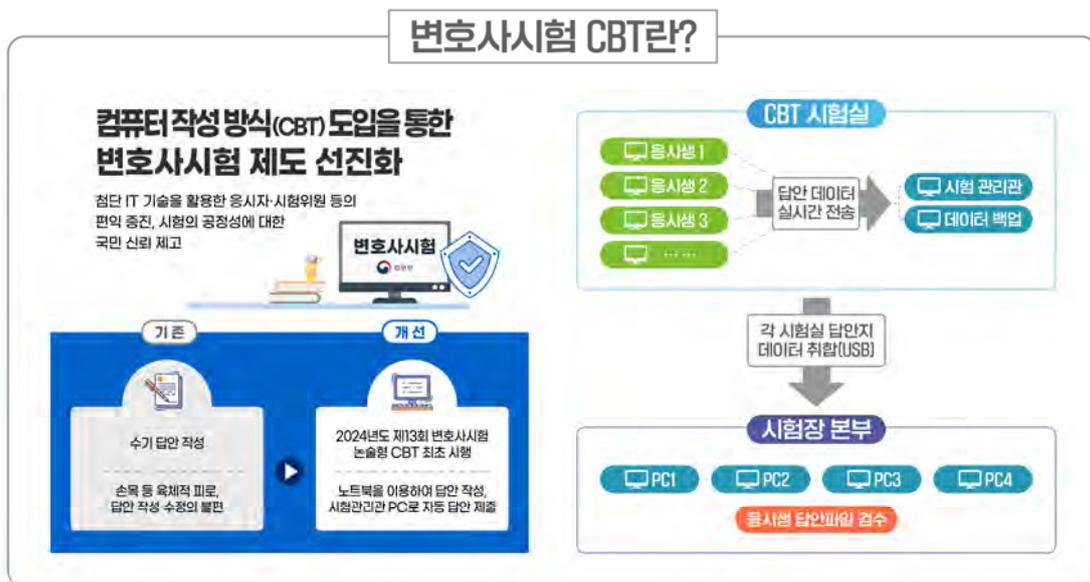
법무부는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 1. 실시된 모의시험에서

- 4) 현재 2012. 4. 24. 선고 2009헌마608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 :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현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2 참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 5)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시험은 3과목(헌법, 민법, 형법)이었던 사법시험 때보다 4과목(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더 늘어난 셈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의 경우 사법시험에서는 논술식 또는 악술식 문제 또는 사례형 문제의 형태로만 실시되었을 뿐, 기록형 시험의 형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에서는 3과목(공법, 형사법, 민사법)에 대해 기록형 시험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 6)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 형사특별법, 민사특별법, 개별행정법령 등이 출제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형사특별법의 분야는 변호사시험에서 중요한 출제 범위에 속한다.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시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 저장 USB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등 답안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 컴퓨터 활용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기반의 시험(CBT)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는 2022. 7. 19.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간담회', 같은 해 8. 10.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24. 1. 실시될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⁷⁾

변호사시험에 도입된 CBT의 개념과 운영방식은 아래의 그림을 통해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⁸⁾



(2) 시험장 환경 구축과 점검 과정

법무부는 2022. 7. CBT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컴퓨터 기반 논술형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CBT 시험 실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였다.

7) 법무부의 2022. 8. 10.자 보도자료 참조

8) 법무부의 2024. 1. 16.자 보도자료 참조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시험, 네트워크·노트북 등의 전산장애 위험, 장애발생 시 응시자의 중대한 불이익 발생 및 회복 불가능 등을 고려할 때 CBT 방식의 시험 실시를 위해 안정적인 시험장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CBT 시험 실시에 필요한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춘 시험장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변호사시험을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CBT 시험장은 국가가 나서서 마련하거나 혹은 CBT 시험의 환경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CBT 시험장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법무부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각자 자체 예산을 들여 6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실시 이전까지 CBT 시험 실시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CBT 시험장·시험실 구축을 위한 변호사시험 CBT 시설 기준에 의하면 네트워크와 전선은 바닥에 고정되거나 매립되어 있고 응시자 좌석에 직접 연결된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과 전원 공급선이 있어야 설치되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하여 L2 스위치에 대한 UPS를 설치하고, 나아가 비상용 전력공급망이나 비상발전기 또는 비상용 발전차량 등도 설치할 것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법무부가 정한 엄격한 CBT 시험 관련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대학의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교육부가 ‘2023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및 ‘2023년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사업비(교육·연구환경 개선비,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등)를 활용하여 CBT 시험장(실)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로스쿨은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2023. 7.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가 완료되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협조 하에 전국 로스쿨 CBT 시험장에서 2차례의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2023년 8월, 10월)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운영상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차례 점검하고, 시험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며,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의 오류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나 마우스 등 기계 오작동 또는 응시생의 조작실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큰 탈 없이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3) 수기 방식의 병행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답안 작성방식이 수기(手記) 방식과 CBT 방식이 병행되었다. 논술형 시험에서도 종래의 변호사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이답안지에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수험생들은 수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기 방식 응시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하였다.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 지필 작성 방식(Paper Based Test, PBT)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하였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로 시험을 선택하였다. CBT 방식을 선택할 경우 답안 작성에서 시간 절약과 육체적 피로 감소, 각종 문자표 활용에 따른 편리성 등 유리한 점이 많다고 수험생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향후의 과제

전반적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무부의 철저한 준비로 최초로 CBT 방식의 논술형 시험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BT 방식은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한다는 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CBT 시험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CBT 시험 장소의 충분한 확보,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와 보안성 유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라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나 보안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CBT의 실시에 필요한 안정적인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CBT 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국가가 직접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시험 장소를 제공하는 각 로스쿨에 CBT 시험 환경 구축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합격자 결정의 방법과 절차

(1)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서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는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1문).

(2) 합격자 결정의 방법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본문).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단서).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위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3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살펴보면,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3 참조).

그리고 각 과목별 배점 및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로 한다. 다음으로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로 한다. 한편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로 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별표 4 참조).

이에 따라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 시험과목의 문제 유형별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 과목	문제유형(배점)	문제유형(배점)
공 법	선택형(100점)	사례형(200점)
		기록형(100점)
형사법	선택형(100점)	사례형(200점)
		기록형(100점)
민사법	선택형(175점)	사례형(350점)
		기록형(175점)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	사례형(160점)

(3)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

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함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해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함
-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로 한다는 의미: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전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로 한다는 의미: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전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주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법무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참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변호사시험법 제15조). 이에 근거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논의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2항).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법원행정처장 추천), 검사 2명, 변호사 3명(대한변협 회장 추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교육부 공무원 포함)으로 위촉한다(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조인 출신 위원이 최소 8명(법무부차관 포함)이고, 비법조인 위원이 최대 7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법조인과 비법조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혹여

법조인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다수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절차

(1) 합격자 규모의 사전 공고

2022년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적 분포, 응시자의 수, 전년도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합격자의 규모가 미정인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채점 결과가 나온 뒤에 합격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변호사시험 실시 전에 합격자 결정기준을 미리 마련한 후, 이를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에 발표하고 있다.

2022. 1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는 기준을 의결하였다. 여기서 결정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법무부는 12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된 2023. 1. 18.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⁹⁾ 이는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합격 예상 인원을 미리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사례가 되었다.

2023. 11.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2023. 11. 17.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통해 “1,730명 내외로 하고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이라는 합격자 결정기준도 함께 발표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변호사시험 종료 후에 합격자 결정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달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50여 일을 앞둔 시점에 합격자 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이처럼 합격자 결정기준 발표 시기를 전년도보다 시험 실시 이전으로 앞당긴 것은 수험생들에게 합격자의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합격자 수의 최종 확정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전년도 합격자 인원, 응시인원, 동점자, 합격자와 불합격자

9) 2023. 1. 18.자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 결과 및 합격자 결정기준 발표” 참조.

간의 점수격차, 최근 몇 년간의 합격률 추이 등을 기초로 합격자 수에 관한 몇 가지 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 대표와 학계 대표에서도 별도의 안을 내고 있으며, 간혹 시민단체 대표가 변호사 합격자 수에 대한 별도의 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체로 변호사측은 합격자 수를 최소화하려는 안을, 로스쿨측에서는 가급적 합격자 수를 늘리는 안을 각각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당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번번이 변호사 대표와 로스쿨 대표 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와 격렬한 공방이 이루어진다.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측과 로스쿨 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최종안이 도출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무부는 합격자 수의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자 2022. 7.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변호사, 로스쿨 교수, 판사, 검사, 교육부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 4. 2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1,700명 내외의 기준과 응시인원(58명 증가)과 동점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결 끝에 최종 합격자 수를 1,725명으로 결정하였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730명 내외의 기준과 응시인원(3,290명)과 동점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는 4. 19.경 개최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 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IV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1. CBT 논술형 답안의 채점 방식 변화에 따른 합격자 발표 시기 조정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된다. 이렇게 제출된 수험생의 답안은 법무부가 검수절차를 거친 후 과목별로 종이답안지로 출력하여 채점위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수기식 방식(PBT)의 경우 종이답안지를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일일이 복사하는 수작업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CBT 방식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답안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이처럼 채점용 답안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해짐에 따라 전체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BT 답안의 경우 채점위원들은 수기식 답안에 비하여 답안지의 글씨를 알아보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어 채점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래 4월 말경에 있었던 최종 합격자 발표시기를 이제는 그보다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합격자 발표 때까지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소중한 시간을 무용하게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최종 합격 여부가 좀 더 빨리 확정된다면 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좀 더 충실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합격한 수험생들도 빨리 마음을 다잡고 차년도에 있을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앞으로 CBT 시험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더 늘어나고, 또 CBT 방식의 시험관리에 실무진의 경험치가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를 3월 말까지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온라인 채점 방식의 도입

(1) 답안을 PDF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

CBT 도입 이후에도 채점용 답안지를 일일이 종이로 출력하여 채점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채점기간의 단축은 현저히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점 과정에서 종이답안지 위에도 일일이 세부점수를 기입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채점위원들 중에는 채점할 답안지를 PDF 파일로 USB에 담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시험 답안지를 PDF 파일로 제공할 경우 USB 분실의 위험이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에 따른 답안 파일의 훼손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PDF 파일을 채점위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온라인 접속을 통한 채점 방식의 도입 방안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를 입력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점용 사이트를 온라인 채점이 가능하도록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채점위원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답안을 채점하도록 하는 온라인 채점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답안지 배송이나 회수 절차가 생략되어 채점 시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채점위원들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답안의 내용을 좀 더 신속하게 일별할 수 있어 채점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답안을 정독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상을 가지고 전체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채점기준표에 따라 개별 논점에 대한 세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면 줄속으로 채점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또는 연구교수 등 선정을 위한 온라인평가에서는 평가위원들이 해당 기관의 전산시스템(e-RND)에 접속하여 PDF 파일로 탑재된 신청서를 보고 개별 평가 항목마다 세부 점수를 부여하면 자동으로 합산되어 총점이 부여되는 방식의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주요 학술지들은 논문의 심사과정에 온라인 심사시스템(JAMS 2.0)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세부 평가 항목별로 부분 점수를 기입하는 란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접속을 통한 채점 방식을 도입하되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면 채점기간도 단축되고 세부 논점에 대한 충실한 채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합격자 결정 기준의 지속성 제고 필요성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합격 인원의 규모를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기준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시험 시험 전에 미리 합격자 규모를 대략적으로 명시할 경우, 수험생들이 상황을 충분히 예측한 상태에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올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시험 실시 전에 미리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 수의 결정 기준이 매년 달리 정해진다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해마다 발표될 새로운 기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스쿨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합격자 결정방법의 법정화 필요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또는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의료인 국가시험의 경우

「의료법」 제9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국가시험등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

라, 「의료법 시행규칙」은 [별표 1의3]에서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각종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대학(치과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 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이 경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 의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3항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제10조에서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시행령 제10조 제1항)
-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시행령 제10조 제2항)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시행령 제10조 제3항)

-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제4항)
-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시행령 제10조 제5항)

(3) 변리사시험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변리사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변리사법 시행령」은 제4조에서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시행령 제4조 제2항)

(4) 세무사자격시험

「세무사법」 제5조 제3항에서 세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법 시행령」은 제8조에서 ‘합격자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시행령 제8조 제1항)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5) 변호사시험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은 각종 전문직 자격시험에서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대부분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일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합격자 결정방식을 흔히 '절대평가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2항 이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최소합격인원 미달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시험은 위에서 살펴본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들과 차이가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해마다 몇 명을 합격시킬 것인지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고시에서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인원만큼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과거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고등고시 시절의 잔재가 변호사시험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발시험의 방식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 로스쿨 도입취지를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의 성격에 걸맞게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더불어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도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들어서 합격자의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의 수급상황은 이미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2,000명)을 정할 때 고려된 것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호사 수입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변호사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을 확정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매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의 규모를 정할 때 또 다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법조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입학정원에 따라 한정된 인원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놓고서, 또 다시 변호사 시장의 과포화를 이유로 합격자 수를 통제하려는 것은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중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의사의 경우 의료시장의 수급상황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거둬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변호사시험에서만 법조시장의 수급상황이 합격자의 수를 결정할 때 또 다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5.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정하는 방안

(1)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 필요성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수험생들에게 공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변호사단체대표와 로스쿨대표 간에 현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상호간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다른 전문자격시험제도와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결정의 기준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데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나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서 합격자 결정의 기준을 일정한 점수 또는 일정한 비율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부 전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로스쿨 입시의 관문을 통과한 후 3년간 국가가 요구하는 로스쿨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대부분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도입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급급하게 되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전문분야의 법과목(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독점규제법, 환경법, 국제법 등)을 수강하거나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신 변호사시험의 과목을 위주로 수강을 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수들도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학부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 복잡다기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법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법률가 등을 양성하려던 당초의 야심찬 교육목표는 잊혀진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되살리려면, 변호사시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특히 합격자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절대평가의 방식 도입방안 검토

지금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처럼 과목별 득점과 평균 점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실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주축이 되는 법전문평가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국 25개 로스쿨이 공통의 상대평가기준에 의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정의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적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응시자들이라면 변호사시험에서 일정한 기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리는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검색 또는 관련 서적의 참조를 통해 깨칠 수 있고, 또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실무능력 또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터득해나갈 수 있다. 변호사로서의 유능함은 반드시 법리를 변호사시험의 빼어난 성적이나 의뢰인의 구미에 맞게 법리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의뢰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변호사, 형편이 어려워 수임료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정성껏 제공할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 그간 그 어떤 변호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변호사... 이러한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절대평가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시험의 난이도가 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조윤리시험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해는 합격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가 또 어떤 해는 갑자기 합격률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험생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된다.

(3)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회 변호사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인원수에 대비한 합격자의 비율을 법령에서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수를 둘러싸고 매년 벌어지는 감정적 대립과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고, 수험생들에게는 적당한 긴장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감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합격자의 비율을 정할 때 총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해당 년도 졸업예정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해당 시험의 실제 응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입학정원의 75%인 1,500명 이상을 합격시킨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후 누적 인원이 증가하면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1,700명대로 합격자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입학정원 2,000명은 계속 고정되어 있고, 실제 응시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여전히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개인적으로 매회 변호사시험 총 응시자 중 75%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변호사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에 상당수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내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등에서 변호사를 임용하는 사례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으며, 중소기업이나 대형병원 등에서도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고용변호사나 사내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초임 변호사의 급여도 초기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될 때보다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규모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⁰⁾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법이 미치지 못하던 자리를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하여 메꾸어 줌으로써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도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폭 증원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며 변호사 수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10) 노수환, “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편”,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2024년 주요 4대 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4. 2. 28. 156-157면 참조.

6. 현 단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가 적정한지 여부

(1) CBT 방식 도입에 따른 영향의 정도

사례형과 기록형의 논술 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으로 수험생들의 점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자는 의견이 있다. CBT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많은 분량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답안의 내용이 보다 풍성하고 더 정돈된 답안이 많아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볼 때 CBT 방식으로 진행된 작년 8월, 10월 모의고사의 논술형 시험의 평균 점수는 수기식 방식의 모의고사 논술형 평균 점수와 비교할 때 뚜렷한 성적 향상을 보인다고 말하기 어렵다.

〈CBT 방식 도입 전후의 점수 분포〉

년도 차수	선택형	사례 + 기록형	선택과목	총점
22' 6모	207.77	475.49	88.99	772.25
22' 8모	203.92	488.99	93.10	786.01
22' 10모	214.91	555.06	96.69	866.66
23' 6모	204.24	452.05	83.99	740.28
23' 8모(CBT)	199.20	491.94	90.47	781.61
23' 10모(CBT)	231.57	547.61	96.21	875.39

※ 선택형 점수: 공법, 형사법, 민사법 모두 응시한 자의 과목별 평균 합산점수

※ 사례+기록형 점수: 채점자료 분석희망교(매회 17~18개교)의 과목별 평균 합산점수

※ 선택과목의 점수: 매 회차별 7과목별 평균 합산 점수

※ 총점: 위의 선택형 점수, 사례+기록형 점수, 선택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

2022년의 6월과 8월 간 성적 향상폭(13.5)에 비하여 2023년의 6월과 8월 간 성적 향상폭(39.89)이 더 크다는 점에서 CBT 방식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10월 모의고사의 경우 전년도 10월 또는 같은 해 8월의 성적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성적 향상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모의고사 성적은 매번 시험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표에 제시된 논술형 시험의 점수는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토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13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들 사이에도 CBT 답안의 우수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따라서 CBT 방식 도입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 사이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최근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적정성

전술한 바와 같이 2022. 12. 27.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하되,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 4. 2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합격자 수를 1,725명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서 특히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수험생의 수(3,255명)가 제11회 응시자의 수(3,197명)보다 더 늘어난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3년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99%로, 2022년 53.55%, 2021년 54.06%에 비하여 더 낮아진 것이어서, 수험생들로서는 합격률이 감소된 것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합격인원 및 증감 추이〉

(단위 : 명)

회차 (시험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합격 인원 (증감)
			응시자 대비	입학정원 (2,000명) 대비		
1회(2012)	1,665	1,451	87.1%	72.5%		
2회(2013)	2,046	1,538	75.1%	76.9%	381	87
3회(2014)	2,292	1,550	67.6%	77.5%	246	12
4회(2015)	2,561	1,565	61.1%	78.2%	269	15
5회(2016)	2,864	1,581	55.2%	79.1%	303	16
6회(2017)	3,110	1,593	51.2%	79.6%	246	12
7회(2018)	3,240	1,599	49.4%	79.9%	130	6
8회(2019)	3,330	1,691	50.7%	84.5%	90	92
9회(2020)	3,316	1,768	53.3%	88.4%	-14	77
10회(2021)	3,156	1,706	54.1%	85.3%	-160	-62
11회(2022)	3,197	1,712	53.6%	85.6%	41	6
12회(2023)	3,255	1,725	52.99%	86.3%	58	13
13회(2024)	3,736	3,290				

올해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023년 11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격자 규모를 1,730명 내외로 하고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공고된 바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때는 ‘동점자 등’을 고려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인원, 동점자 등’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응시인원’의 증감 요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3,290명)가 제12회 응시자 수(3,255명)에 비해 더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최종 합격자 수는 1,73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보면 약 5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추세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는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2023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94.73%(응시자 3,358명, 합격자 3,181명), 2023년도 약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93.69%(응시자 2,014명, 합격자 1,887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의사나 약사 등 다른 전문자격시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일단 대학을 졸업한 후 2,00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로스쿨 입시를 통과해야 하며, 로스쿨 입학 후에는 3년간 법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주요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도 이처럼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국가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합격률이 더 낮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무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규모에 대해, 12기 졸업생 기준 합격률 71.67%,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6.25%, 졸업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8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 88.14%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¹¹⁾

그런데 총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로 보면, 2023년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은 104.02%(입학정원 3,058명, 합격자 3,181명), 약사 국가시험은 107.83%(입학정원 약 1,750명, 합격자 1,887명)인 데 비하여, 변호사시험은 86.25%(입학정원 2,000명, 합격자 1,725명)에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문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사	응시자수	3,302	3,323	3,336	3,373	3,307	3,210	3,214	6,043	3,358
	합격자수	3,126	3,106	3,095	3,204	3,115	3,025	412	5,786	3,181
	합격률	94.67%	93.47%	92.78%	94.99%	94.19%	94.24%	12.82%	95.75%*	94.73%
치과 의사	응시자수	751	808	795	785	812	802	766	767	794
	합격자수	725	767	746	745	790	780	721	708	753
	합격률	96.54%	94.93%	93.84%	94.90%	97.29%	97.26%	94.13%	92.31%	94.84%
한의원사	응시자수	816	792	821	833	746	770	771	753	823
	합격자수	772	752	775	797	721	744	743	731	811
	합격률	94.61%	94.95%	94.40%	95.68%	96.65%	96.62%	96.37%	97.08%	98.54%

11) 법무부 2023. 4. 20.자 보도자료 참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간호사	응시자수	16,285	18,655	20,196	20,731	21,391	22,432	22,933	24,175	24,015
	합격자수	15,743	17,505	19,473	19,927	20,615	21,582	21,741	23,362	23,359
	합격률	96.67%	93.84%	96.42%	96.12%	96.37%	96.21%	94.80%	96.64%	97.27%
약사	응시자수	1,716	1,869	1,996	2,017	2,106	2,126	1,920	1,993	2,014
	합격자수	1,668	1,772	1,868	1,839	1,896	1,936	1,748	1,840	1,887
	합격률	97.20%	94.81%	93.59%	91.18%	90.03%	91.06%	91.04%	92.32%	93.69%
변호사	응시자수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3,255
	합격자수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1,725
	합격률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53.55%	52.99%

또한 법무부는 ‘최종 누적합격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변호사시험의 최종 누적합격률이 88.14%에 이른다고 하는데, 굳이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2023년부터 5년간 5%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간다면 총 응시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2025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조금씩 합격자 수는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개선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토론 1

최윤철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최윤철 |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들어가는 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대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 토론자로서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상경 이사장님,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들과 법전협 협의회 김명기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으며, 그동안의 결과 및 영향 등을 분석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이 입법자의 의도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발제자의 문제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토론자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 법)이 제정된 후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발제와 공법연구에 게재한 글¹⁾에서 로스쿨 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제도 및 법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법제 및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스쿨법’에 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따른 입법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후에 그러한 입법개선 또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령에 따라 매 5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로스쿨 제도의 근거인 ‘로스쿨 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그에 따라 법률은 물론 제도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가 평가는 특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 법’에 정기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발제를 해 주신 서보국 교수님과 권진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은 두분 발제에 대한 질문보다는 두분의 발제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보태는 정도에서 하려고 한다.

1) 최윤철, “로스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6집 제1호(2007.10), 183쪽 이하.

II.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서보국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

서보국 교수께서 제기하신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도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향후 변호사시험의 유형, 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은 서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토론자도 서교수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질문보다는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시험부담의 경감은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에 틀림없이 도움을 줄 것이다. 시험과목, 시험시기, 시험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시험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법전원 내부의 교육과정 및 법학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서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식 시험 실시 시기 조정과 시험결과를 진급여부(유급)결정에 연계하여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학적성시험' 응시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된다. 특히,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수는 물론 응시연령이 급격히 낮아진 현재에서 1학년 또는 심지어 2학년 때 객관식 시험을 치루고 난 후 결과에 따라 진급(유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학적성시험'을 재응시하고 전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학사관리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객관식 시험을 응시하고 유급을 한 경우 '법학적성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서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법과목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변호사시험과목 중 전문화 과목 교육의 부실 내지 공동화를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단순히 시험과목의 조정(추가 등) 등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주요 법과목 시험으로 점수가 집중되어 있고, 실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볼 때 전문과목과 기초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과목이 법학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법학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등의 면에서 현재의 문제를 절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일정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전필과목의 확충 또는 전필 과목화), 전문과목에 대한 이수과정을 두고 이수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거나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기 등에 대한 서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점에서 공감을 한다. 이 가운데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며, 동시에 객관식 시험을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에 실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3학년을 대상으로 주관식 시험을 현재 변호사 시험시기에 실시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재시 이상의 수험생의 경우도 동일한 시기에 응시하면 될 것이다(이미 사법시험에서 선택형 시험 효력을 차년도

시험에 인정하였던 경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2학년때 실시(변호사 시험 마지막 날)하는 것은 시험 운영도 문제가 있고, 나아가 2학년을 마치고 법학적성시험을 재응시하게 할 유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모두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서교수님의 주장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기록을 제시하고 기록을 통해서 사례형 쟁점^a을 추출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시험 시간 등도 조정하는 것을 전제)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변호시험 각 과목과 유형별 배점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자격시험을 위한 방향으로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권건보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컴퓨터 기반방식(CBT)으로 실시되었다. 이전 수기방식의 시험에서 벗어나 타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험생들의 불편과 채점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악필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는 물론 채점자들의 불편과 수고가 경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CBT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장애 등 시험진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CBT를 도입하는 과정과 제13회 시험진행을 하는 가운데 각 법전원, 법무부, 교육부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들(비용, 운영주체, 책임문제 등)은 제13회 시험 종료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CBT 환경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시험운영주체와 시험관리책임 등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법무부는 제13회 시험부터 합격자 규모의 대강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험이 종료된 후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간의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수험생들의 알권리 등을 일정부분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합격자 규모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험준비는 물론, 법조인 공급 규모에 따라 법률 시장도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합격자 규모를 법무부가 매년 사전 고지하는 것이 이전 사법시험과 같이 사실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고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법전원 제도와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과 자질을 갖춘 법전원 졸업생들에게 변호사라는 전문자격증을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격시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가 합격자 규모의 대강을 시험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러한 고지가 합격자 수

고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전원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권건보교수님이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일반적 소양은 물론 각 영역의 전문능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CBT가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물리적인 수고는 상당 부분 떨어졌다. 채점자들의 경우도 채점이 매우 편해져서(8, 10모에서 이미 경험) 채점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공정성(심리적)도 확보가 되었다. 아마도 제13회 변시를 채점하는 채점자들도 이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점기간도 상당부분 단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채점방식이 여전히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출력하여 채점하는 까닭에 채점 준비기간과 채점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은 그대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CBT시험방식을 발전시켜서 채점을 전산을 통해 직접하여(예, 대학 논술 시험 채점) 시험과 채점을 일원화 하면 채점기간 및 채점관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채점기간 및 관리 기간이 단축되면 시험 후 발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법전원도 졸업 관리, 입학행정 등 학사관리 측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서보국 교수님과 권건보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현행 법전원 제도의 문제점 및 변호사 시험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점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고 그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두 교수님의 문제점 제기와 개선책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행 법전원 제도와 법조인 양성 체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전문적이고 균형있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현행 제도가 퇴행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고 새로이 떠오르는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큰 틀의 논의도 필요하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제도의 근거인 '법전원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선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토론 들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종합토론

토론 2

박정훈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박정훈 |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관식·주관식의 이원화 방안, CBT도입에 따른 합격자결정의 개선이란 관점에서

1. 서론 - 2개의 발제문을 읽고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기치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의 세월이 지났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대개 어떠한 새로운 제도가 출발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그 제도의 전체 부분의 제도개선을 모색·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룰이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제도는 그간 입학기준,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법조연수프로그램 및 이들 전체 과정에서 2009년 개원 이후 교육부·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적 영역의 개입 수준과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까지 출발 시점에 설계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원 교육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매년 법전원 원장님을 물론 법원, 교육부, 법무부, 언론사 등 관계자분을 모시고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고, 금년에도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이란 중요 주제로 변호사 시험과 관련하여 심도 깊이 다루게 되어 이 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개학과 보직 등으로 바쁜 가운데 충남대학 법전원의 서보국 교수님, 아주대학 법전원의 권건보 교수님 2분의 발제에 법전원 협의회 구성원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는 우리들의 아이디어와 담론, 구상이 단순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분 바람이 현재와 미래의 꽃을 피운다.”는 평범한 진리와 같이 이후에 더 혁신적이고 더 발전적인 변호사시험제도의 설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II.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발제의 논의와 법전원 제도의 다면적 이해관계

1. 2가지 발제 관련

(1)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 방향 - 서보국 교수님 발제 관련

-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서보국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는 현재 변시 제도가 가지는 ① 3가지 유형(객관식·사례형·기록형)의 5일간 시험 집중으로 인한 법전원 교육 평가의 문제, ② 객관식 시험을 주관식(사례형·기록형)과 분리의 필요성, ③ 그리고 이 분리를 통해 법전원 교육과정 중에서 “(학년)유급제도”와 연계한 객관식 시험제도 운용 등에 관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제자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발제자는 위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행「변호사시험법」,「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분석하여 기존 법제 내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가령, 시행령 개정으로 객관식 시험 비중의 가능성을 논증하고 이는 ‘5탈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는 등)과 불가능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다음, 현행 변시에서 객관식 시험 비중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의 “분리”는 법률 개정 사항이란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객관식 시험의 분리 실시를 위한 방안으로 ① 법조윤리시험일(7월)에 3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②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 ③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 시험 실시 방안에 관해 모색하고, ①의 경우에는 개선 효과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②·③의 경우에는 법전원 교육과정상 유급제도와 연계하여 모색하였는데, 이 중 방안 ②는 2학년에서 3학년 유급기준으로 병용하여 객관식 시험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곤란성을 지적하고, 이 중에서 방안 ③이 법무부와 로스쿨 학생 모두 만족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발제자는 유급제와 연동, 원생 부담 감경의 관점에서 부가적으로 객관식 시험의 비중 완화와 응시 제한에 관해 5년의 기간 기산점 등에 관한 「변호사시험법령」의 개정도 주장한다. 이 같은 발제자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간 법전원 원생의 객관식 시험의 피해(가중한 판례 암기, 주관식 시험과 동시 병행해야 하는 객관식 시험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식과 주관식의 분리 시도, 각 개별 방안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객관식의 출제범위 제한, 객관식 시험의 영향 약화 등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다만, 발제자의 연구 내용과 그 결론인 [방안 ③]에 대해 몇 가지 우려 혹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이상적인 제도의 설계와 운용의 실체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점에 현재의 객관식 출제 범위를 줄이고, 변시에 대한 영향력도 낮추어 학년 진급시험으로서 기능과 변시 객관식으로서의 기능을 겸유하는 전국적 법전원 규모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과연 각 법전원이 1학년 교과로 설정된 기본 교과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법무부가 1년 이내에 2개의 시험(1학년 객관식과 3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변시 주관식 시험)을 수행할 인적(출제·감독 등)·비용적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둘째는, 무엇보다 학년 유급시험은 대학 교육 자율권 측면도 있으며, 법전원의 교육 다양성이란 교육 본질의 측면과 국가에 의한 획일적 시험인 객관식 시험을 양자의 기능과 목적을 달리함에도 병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즉, 그러지 않아도 우리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국 균일의 입시와 교과로 인해 이른바 “찍어 내는 교육”을 더욱 가중할 우려도 있다. 셋째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기치로 출발한 법전원 교육이 1학생부터 시험에 몰아넣을 경우, 이 기간 내에 법전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부분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가령, 실습 교과나 국제교류, 외국어 강의 등은 물론 2학년 진급시험 때부터 법전원 서열화 등을 생각해 보면 쉽게 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 중간 결론으로, 변사에서 객관식의 분리, 환산 비율의 개정을 통한 객관식 영향력 완화 등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유급시험과 연계되어 교과 과정 진행 중에 객관식 시험의 실시에는 더 많은 검토 과제가 있다고 본다.

(2)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개선 방향 - 권건보 교수님 발제 관련

- 권건보 교수님의 CBT 그 자체에 관한 발제의 요지는, 2024년부터 도입된 CBT는 장점이 많지만, 변시가 국가 주관의 시험이므로 이후 시스템 운용·유지·보수 등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당위성, 채점에서 PDF 답안 화일 제공 방안이나 온라인 접속을 통한 채점 방식의 도입 등으로 채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정보사회에 적합한 과학적 채점(키워드 검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 위와 같은 권건보 교수님의 CBT 관련 지적과 인식, 제도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CBT는 종래와 종이 문서에 의한 집필 시험의 안정성과 달리 컴퓨터 기술 기반에 의한 것으로 아무리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20개 법전원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현재의 형태라면 기술적 무결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나, 수습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항상 수반한다는 점이다. ② 답안지 PDF화 및 온라인 접속을 통한 채점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답안지 ‘열람’이란 형태로 공개가 되었으나, 온라인으로 답안지 PDF형태로 데이터 제공이 될 경우, 수험생의 전자문서 형태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정보공개법 제15조 등 참조), 그렇게 될 경우 일정 규모의 답안지 공개로 인한 수험생가의 답안지 비교 등을 통한 ‘채점의 공정성’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음은 물론, 극한적으로 말하면 전국 모든 수험생의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법무부 변시 CBT데이터가 전부 공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 권건보 교수님의 발제 중 핵심 부분은 법전원 제도의 도입 경위 및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대로, 지금과 같이 매년 응시자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약 1,700명 정도의 변시 합격자가 아니라 ‘자격시험’에 부합하도록 입학자 대비 상당수가 합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현행「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행정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령」의 개정을 통해 명실공히 자격시험화(절대평가방식의 자격시험)를 위해 「의료법령」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과 「세무사법령」에 의한 세무사 등과 같이 법령에서 개별 시험과목 100만점에 40점 정도를 과락기준으로 정하고 전체 평균 60점 정도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권건보 교수님의 주장 그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저 역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제고에 찬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우선은, ① 일본 로스쿨의 실패(? : 설립 당시의 50% 대학이 로스쿨을 폐지함)의 근본 원인은 낮은 변호사 합격률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로스쿨 체제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변호사 지위 하락(낮은 보수)에 있다. 이 말은 하기 쉬운 말로 현재 변시 합격률 상향 조정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말하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집 전체를 태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② 특히, 최고 전문직으로 변호사와 의사를 비교하지만, 어떤 면에서 의사는 환자와 관계에서 치료·치유이만, 변호사는 국민의 권익옹호라고 하나 그 내부 혹은 본질은 쟁송이란 분쟁을 중심 업무로 하는 직역으로 변호사 수의 증가가 국가사회를 분쟁사회화하는 측면도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보수가 낮아질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을 통한 기본 보수의 유지도 가능하고, 전문 인력의 해외 송출도 가능한 측면도 있다. ③ 분명한 점은 과거 대학 교육과 달리 지금과 같은 정보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의사표시 등도 일반인이 문서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조인은 이후에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법령으로 제도화할지는 더 많은 검토 과제가 있다고 본다.

(3) 법전원 제도의 다면적 이해관계

- 법전원에 관련된 야간 로스쿨 도입, 입시, 연구와 교육이 분리된 교육과정, 이론과 실무의 혼합, 시험에서 시험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 운용, 기계적 장학혜택, 주기적인 평가 등의 문제와 오늘 두분 교수님인 다룬 변시에서 객관식 시험,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고 등의 모든 쟁점은 단순히 국가와 법전원 간의 2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해결 과제가 다면적 이해관계에 있다.
- 가령, 변시 객관식 시험과 관련해서 법전원 원생 중 상위권 성적의 원생들은 상대적으로 현행 제도에도 객관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음은 물론 득점 비중도 크게 두지 않는 반면에, 낮은 하위권 성적 원생은 객관식을 매우 중요시함을 물론 변시 합격의 중요 부분으로 판단하여 대응하고 있다. 행정법 전공자인 저의 경우 행정법은 객관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나, 다른 행정법 교수님은 대부분 행정법 법리의 특수성과 학문 영역의 쇠퇴를 성토했으며 행정법은 반드시 객관식 과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그리고, 합격률 확대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입장과 법무부·교육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미 배출된 졸업 변호사의 입장(한국변협)과 재학생의 입장, 각 법전원 간에도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 요컨대, 이상적인 제도의 설계는 제시한 목적에 전체는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법전원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변시 객관식 시험’, ‘변호사 합격률 확대’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III. 소결 - 대학(법전원)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1] 변시 객관식 시험은,

변호사 주관식 시험과 함께 치루어져야 한다. 다만,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의 전제로 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P/F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변시 주관식 시험은,

현행 사례형만 시험과목으로 하고, 기록형은 교과에서 법정 교과로 하되 변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미 법무부가 제시한 소정의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6개월~1년)을 도입하여야 한다.

[3] 변호사 합격률 확대는,

동의하지만, 그 범위는 변호사 직역이 현재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종합토론

토론 3

정영진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3

정영진 |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개설

두 분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서보국 원장님께서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분리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권건보 교수님의 경우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저는 권건보 교수님의 발표문 중 다음의 문장이 오늘 심포지움의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급급하게 되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전문분야의 법과목(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독점규제법, 환경법, 국제법 등)을 수강하거나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신 변호사시험의 과목을 위주로 수강을 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수들도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학부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 복잡다기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법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법률가 등을 양성하려던 당초의 야심찬 교육목표는 잊혀진 지 오래다.”

또한 서보국 원장님의 발표문 중 다음의 문장도 로스쿨 교육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0%의 응시생이 선택하는 국제거래법 과목에서조차 담당 전임 교원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규강의 15주와 사설학원강의 5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2% 정도인데, 권건보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단계별로 상향하여 합격률이 75% 정도에 이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제10조 제1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

하여 현재 로스쿨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법령의 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에 해당합니다.

서보국 원장님의 발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객관식 시험을 주관식 시험에서 분리해서, (i) 법조윤리 시험과 함께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ii)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윤리시험을 제외하고는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만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제5조 제1항, 제2항). 다만, 객관식 시험의 출제범위나 환산비율은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주관식 시험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제10조 제4항).

II. 발상의 전환

1. 변호사시험 범위의 축소

2023년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뉴욕주의 경우 66%이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52%입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法律职业资格考试) 합격률이 15%¹⁾ 내외입니다.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을 닮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계 없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로스쿨 수업의 대부분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클릭이나 검찰을 지망하는 학생의 경우 로클릭이나 검찰에 필요한 과목을 듣기 위하여 로스쿨 수업 대신에 독학하거나 학원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사견으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3학년 전체 교육과정 중 시험 관련 과목이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졸업을 위해서는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30학점, 즉 10과목²⁾ 정도가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이 되도록 변호사시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전공이 상법인데, 상법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회사법은 주법이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비중이 크지 않지만 로스쿨에서 회사법을 듣지

1) 2023년의 경우 9월 17일 및 18일 양일에 걸쳐 각 360분 동안 객관식 시험을 치고, 객관식 시험 합격자만이 10월 15일 240분 동안 주관식 시험을 친다. 2023년의 경우 객관식 시험 합격률이 30%이고, 주관식 시험 합격률이 40%이다.

2) 기본권론,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재산범죄, 증거법 등이 위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않고 졸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로스쿨에서 증권법 수강은 거의 필수적이지만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계약법 등 변호사시험에서도 중요한 과목의 경우에도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변호사시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로스쿨 수업과 변호사시험은 연관성이 적을수록 교육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스쿨 3년 교과과정 중 변호사시험 과목이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3분의 2의 교과과정을 지식재산권이나 젠더, 국제통상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투입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관련되거나 도움되는 과목만 수강하는 것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개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하에서는 학생들은 로스쿨 교과과정의 거의 100%를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 경우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과정이 최소 9년은 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3년으로 유지한다면, 변호사시험 범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6개월 실무수습 제도의 개편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주요한 교육기관이지만 법조인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 등이 현재 로스쿨 교육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님이,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님이 로스쿨에 파견되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생은 로스쿨 기간 중 2 주간의 실무수습은 필수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위 2 주간의 실무수습 외에 기록형 수업 등 실무 관련 교육은 로스쿨 교과과정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 후에 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개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 각 2개월씩 실무교육을 받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 해결할 문제가 많으나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이 법조인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변호사시험 시기의 조정

전술한 바와 같이 로스쿨 수업과 변호사시험은 연관성이 적을수록 교육효과는 큼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을 매년 1월에 치룬다면 3월 2학기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험범위가 축소된다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사람 보다는 시험공부만 한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생이 로스쿨 3년 기간 동안 로스쿨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졸업 후 4월 중간고사 기간에 변호사시험을 치루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스쿨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도 기말고사 이후에 충분히 변호사시험 공부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i) 객관식 출제와 주관식 출제를 분리하고, (i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및 인공지능을 통한 난이도 조정 등을 종합하면 1주일 이내에 출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III. 정리

이상의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i)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3학년 2학기까지 로스쿨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졸업 이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로스쿨 수업과 변호사시험은 연관성이 적을수록 교육효과는 크다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토론

토론 4

장석천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4

장석천 |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의 선발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설계하여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이 도입 초기의 많은 자료에 나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시험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 학생들에게 학습량과 체력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험생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에 CBT 방식을 채용하여 13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한 방법으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을 덜어 주고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객관식 시험의 분리와 전문화 과목에 서보국 원장님의 견해에 찬성합니다.

2학년을 마치고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여 유급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시험에 대한 부담과 학습량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관리는 법무부나 법전원 협의회에서 관리하면 될 것이며, 탈락한 학생들의 구제 차원에서 1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2회 탈락하는 경우에는 2번의 유급이 되는 것으로서 학칙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적되도록 한다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화 과목에 대해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고 전문영역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과목을 로스쿨에서 교육하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 시험에서의 합격에 집중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과목의 학점 이수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의 전문변호사라면 최소한 실무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로스쿨에서 학습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전문과목에 대해서 9학점(졸업이수학점의 10%에 해당함) 이상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한다면 시험을 위해서 전문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로스쿨에서 전문과목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수 결정과 시기, 채점 기간 등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은 법무부의 사고의 전환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과 수험생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모두 법무부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국민과 수험생을 고려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산이 없어서 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법무부가 확보해야 할 문제이지 협의회나 로스쿨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수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의 의견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자격시험에서 변호사 수의 결정 과정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이 다수인 시험은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 협회와 같이 이해충돌집단이 다수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합격 인원의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다른 자격시험과 같이 시민단체와 법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토론 5

정상은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종합토론

토론 6

이재인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종합토론

토론 7

이진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토론 7

이진관 |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법학교육의 실현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교수님의 깊은 배려까지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 이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사법연수원에 근무하였던 경험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이나 사법연수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는 판사를 통하여 변시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를 포함하여 6명의 판사가 변시 출제 및 채점에 관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분리하고 그 시기를 달리할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예비법조인과 법조인을 상대로 실무교육이나 실무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을 상대로 민사·형사실무과목 강의, 실무수습기회 제공, 변시 모의고사 출제, 법조윤리시험 출제, 변시 출제 및 채점, 가인 법정변론 경영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인 변시 합격자를 상대로 합격자 실무수습에 갈음하여 시행되고 있는 대한변협에서의 각종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예비법조인과 법조인의 실무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입법관 연수, 재판연구원 교육, 사법보좌관 교육, 군판사 및 군법무관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법관들을 상대로 연간 80회 이상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연수원의 업무가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는데 있습니다. 변시 출제기간인 1월 초부터 채점기한인 2월 말까지 특히 사법연수원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인 법정변론 경영대회, 신입법관 연수(120명~150명), 법조경력 연구원 교육(30명 내외), 사법보좌관 교육(50명 내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통상 2월 하반기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인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담당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법연수원 내부적으로는 변시 출제와 채점에 참여할 판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변시 개선안으로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 이원화를 말씀해 주셨고, 주된 이유는 종합적인 법학교육의 실현이나 수험생의 부담완화입니다. 그리고 분리할 경우 법조윤리시험일에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거나 변시 마지막 날에 2학년 또는 1학년을 상대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를 떠나 사법연수원에서 좀 더 원활하게 출제 및 채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려하다면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시 시험이 있는 1월에는 졸업 직전의 3학년이 객관식 시험을 치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시험일에 주관식 시험을 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률개정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3학년이 8월에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시험을 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의 응시자격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된다면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10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정해집니다. 현재 4월경에 정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6~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졸업 직전의 3학년이 1월에 주관식 시험을 먼저 치고 졸업 후 8월에 객관식 시험을 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빠르면 8월에 합격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현재 방식과 비교하여 4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데 그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관식 시험을 먼저 치고 그 후에 객관식 시험을 친다는 점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수정을 가한다면 법조윤리시험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일을 앞당길수록 그 만큼 합격 여부를 빨리 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방식과의 기간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4월에 법조윤리시험을 치고 이때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면 4월 중에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정할 수도 있어 현재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월에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한다면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가 주로 2학년이 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상황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되 그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사법연수원에서 변시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토론

토론 8

김기원 회장/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토론 8

김기원¹⁾ | 회장/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I. 주제 1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의견

1. ‘로스쿨에서는 민사법/형사법/공법 과목만이 강조되는 문제’의 지적에 동의하지만, 객관식 문제의 분리가 유효한 해결방안이 아닐수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시험과목이 아닌 기초법 과목이나 전문화과목의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이미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중략)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에서는 민사법/형사법/공법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만 남게 되고, 로스쿨로의 전환이라는 취지는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예비시험의 부활 등의 쟁점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로스쿨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를 경험해본 법조인들도 ‘7법도 중요하지만, 기초법, 전문분야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일정 정도 학습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집중하느라 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시험 객관식 시험을 1·2·3학년 때 법조윤리시험처럼 응시하게 하는 등으로 분리하더라도, 7법만이 아니라 전문분야 법률 등을 학습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범위나 유형, 학습 대상 분량 등이 다소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주로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을 집중해서 학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로 민사법/형사법/공법의 학업만이 강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이를 유효하게 해결하려면 다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유형의 집중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는 문제의식은 큰 방향성에서는 동의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자칫 실무에 필요한 수준의 학업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현행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하나의 시험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시험기간이 5일(중간휴식일 1일)로 되어 있어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받는 주관적 '학업 압력'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①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등의 시험'에서의 성적이 향후 학점으로 반영되어 장래의 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압력이 상당하며, 재학기간 중 수시로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② 법조윤리 시험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Pass/Fail형 시험이라는 인식, 학점에 반영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압력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으나, 적어도 시험 직전 일정기간 학업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변호사시험은 범위가 넓고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모든 분야를 검증하므로 학업기간 중 보고 듣는 어떠한 내용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고, '선택형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인식을 끝까지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매우 큰 비용과 노력을 매몰할 것이라는 우려로 평범하거나 다소 부족한 유형의 학생에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장기간, 충실하게 공부하도록 엄격한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1~3학년의 어느 기간에 객관식 시험만을 별도로 치르어 Pass하게 만드는 형태의 시험은, 교육과정이 교육적 성취를 내도록 학생에게 긍정적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낮추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물론 '객관식시험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법학교육방법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느냐' 등의 교육철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의 방법론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객관식 시험의 고득점을 고려해 학업에 임하는 태도 역시 변호사가 갖춰야할 역량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입학한 법전원생을 8~10년간 묶어놓기보다는, 입학 이후 1~3년 안에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 객관식 시험 분리가 ①적성에 맞지 않아도 일찍 그만두지 않거나 ②객관식 풀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하거나 ③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지는 등 의도와 달리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이나 법학교육기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로스쿨에서 3~5년, 시험 준비기간 5년을 합해서 8~10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최종불합격자에게 법원/검찰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등의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심리,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대학교와 대학(원)생의 문화와 심리, 학생이 자퇴하지 않아야 더 많은 등록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대학측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객관식 시험이 분리되더라도 적성이 부족하다며 자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객관식 시험이 변호사시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재도전이 반복되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그만둬도 ‘더 쉬운 일도 어차피 없는’ 현실에서, 5탈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수험을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객관식 시험이 너무 어려워진다면, 이는 사법시험 1차처럼 ‘객관식 시험유형 고수’를 변별하는 잘못된 유형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장기적으로 볼 때 우수한 법조인, 바람직한 법조인은 객관식시험을 풀어내는 기술에 극히 숙달된 사람보다는, 사례형, 기록형에 숙달되거나, 법학적 사고방식에 관련한 능력이 학업과정에서 강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객관식 고득점에 학업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교육과정, 법학 학업에 대한 습관이 드는 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학생들의 학업태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객관식 시험이 생각보다 쉽다면, 자칫하면 충분한 학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객관식은 더 볼일이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업 태도를 잘못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기록형으로 출제될 유형에만 관심을 가지고, ‘객관식으로밖에 못 내는’ 유형의 지식들 역시 학업이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선택과목에 대한 로스쿨 교육 내실화방안에는 취지와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을만한 적절한 방안을 통해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 내실화가 꼭 이루어져야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법이 아닌 과목을 반드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게 하여, ‘7법이 아닌 과목을 수강하는데 있어서의 법전원생간 평등’을 추구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최소한 40학점은 7법과 완전히 무관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면, ‘남들도 40학점은 수강하니, 나도 40학점까지는 수강해도 불리한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는’생각에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주제 2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와 합격률간의 관계표

한국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합격률 산정과 관련해 합격자수와 합격률간의 관계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했고, 해당인원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입니다.

① 매년 2,000명이 입학 정원인데, 결원보충제가 존재해 ‘졸업생이 아닌 반수생, 자퇴생’의 상당수를 추가모집하므로, 결국 매년의 졸업자 수는 증장기적으로 2,000명에 수렴한다는 구조를 가정함.

② 5년 이내 5회의 ‘5탈제도’가 있는데, 졸업생들이 전부 합격할때까지 응시하고 중도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함.

매년(기수당) 합격자수	매년 응시자수	합격률	기수당 포기 이탈자수/비율	비고
2000	2000	100%	0 / 0%	법전문 졸업자 무시험 자격취득
1950	2200	88%	50 / 2.5%	
1900	2400	79%	100 / 5%	
1880	2480	75%	120 / 6%	
1800	2800	64%	200 / 10%	
1700	3200	53%	300 / 15%	현행 합격자수 수준
1600	3600	44%	400 / 20%	
1500	4000	37%	500 / 25%	입학자수 대비 75% 합격 기준
1300	4800	27%	700 / 35%	
1000	6000	16%	1000 / 50%	
500	8000	6%	1500 / 75%	

① 위 표의 수치와 백분율은 ‘수렴’하는 수치를 나타냅니다.

② ‘매년의 합격자수’와 ‘기수당 합격자수’는 동일수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700명씩 매년 합격시키면, 한 기수당 평균 합격자는 1700명에 수렴합니다)

③ 기수당 중도 포기자의 숫자와 이탈자숫자의 합계는, 2000명에서 매년의 합격자수를

뺨 값입니다. (매년 1700명씩 합격하면, 매 기수당 중도포기자와 오탈자가 300명씩 나오도록 수렴합니다)

2. '오탈자가 거의 없어 변호사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정도'는 '적당한' 합격자수/합격률로는 안되고, 합격률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수/합격률을 조금 더 높이면 법전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이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합격률을 60~70%정도로 '적정히' 유지하는 것으로는 '입학생 대다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합격률'이 되지 않습니다. 합격률을 75%로 고정시켜도 매년 1880명이 합격하도록 수렴하고, 기수당 오탈자는 120명이 됩니다.

기수당 오탈자가 300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변호사시험을 의식하고, 120명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전원의 교육구조와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만들어내는 충실한 학업에 대한 압력은 사라지면서도, 여전히 변호사시험에만 집중하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시험에 매몰되기 보다는 법적 사고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7법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과목을 학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일각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 판례, 실무적인 공부만 하면 된다, 학설과 이론은 실무에서는 필요없다. 왜 교수를 임용할 때 논문 등을 보는지 모르겠고, 실무지식만 정확히 알면 되는 것 아닌가'는 등의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으나, 당연히 이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전원에서만큼은 바쁜 실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법적 사고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방식, 판례나 결론을 외우는 것이 아닌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 결국 어떤 판례나 법적인 사고든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배 법조인들간에 나름대로의 생각이 교환되어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항상 더 올바른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 의식 등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전원에서는 연구적 사고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해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적으로 실무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최상위의 의사결정과 의견충돌에 참여하는 그룹(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한 수준, 입법론적 수준에서 교수, 판사, 변호사 등이 나누는 지식의 최전방에서의 담론)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모두가 최저한의 실무역량만 갖추면 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법전원생들이 학업과정에서 갖는 심리적 특성, 여러 법률 전문직 고시형 시험이 남아 있는 한국의 상황, 5탈자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5탈자가 갈 수 있는 진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더 깊이 있는 다양성 있는 학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함에도, 합격률을 높이면 법전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적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미집단에서 부지런한 개미를 제거하면 게으른 개미들이 그 부지런한 개미의 자리를 채우고, 게으른 개미를 제거하면 부지런한 개미들이 그 게으른 개미의 자리를 채운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인간 사회에 비유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작은 집단에서 자신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그 결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지적능력 등이 우수한 법전원생들만 모아졌다고 해도, 이들중 일부는 우월감을 가지고 계속해 끊임없이 학업을 지속할 강한 동기부여를 받는 반면, 일부는 열등감을 가지며 '집단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성실한 우등생이 아니라 게으르고 적당히 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전원생들 전원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합격률이 60~70%이상으로 높은 변호사시험만을 요구할 경우, 법전원생 대다수는 그들이 가진 우수한 잠재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학업과 어려운 난관을 요구해도 이를 돌파할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선발되었음에도, 교육제도의 한계가 이들을 나태함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전원생들은 이른바 '검클빅'을 노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것이라는 공포감' 이외의 어떤 것도 이들을 절박하게 공부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압력을 주지 못합니다.

법전원 재학 경험에 비추어보면, 학생 집단에게 '변호사시험 불합격 가능성'에 의한 압박감이 학업을 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중위권이나 그 이하 학생들에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대다수는 원래부터 게으르거나 무기력했던게 아니라, 우수한 법전원생들과의 경쟁에서 무력감을 가지거나, '어차피 변호사시험만 붙으면 되고 적당히 하자'는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쉬운 변호사시험만 요구했다고 해도, '변호사시험이 쉬우니, 다양한 분야를 깊이있게 공부해보자'는 태도를 갖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변리사시험 등 여러 문과전문직 시험이 고시제도의 형태로 남아 있고, 이러한

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업 수준과 역량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지필고사의 점수만이 법조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나, 자칫하면 ‘지필고사로 검증할 수 없는 깊이 있고 다양한 좋은 교육’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부실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음도 현실입니다.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대신, 우선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더라도 학생들을 충분히 학업을 하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는 문제의 보완을 위해 7법이 아닌 전문분야. 기초법에 대한 과목도 일정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과목에 암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해 깊이 있는 리걸 마인드가 도움이 되게 하는(장기간 공부한 수험생이 아니어도, 연구 역량, 법적 사고능력이 있는 교수나 법조인이라면 즉시 고득점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토론 9

이상연 국장 (법률저널 편집국)

토론 9

이상연 | 국장 (법률저널 편집국)

〈제 1주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

서보국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객관식)과 주관식(사례형과 기록형) 이원화 방안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현재의 시험 체계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객관식 문제의 당락이 변호사 시험의 결과를 좌우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의 이원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 및 수험생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보국 교수님의 제안은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 시험의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분산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객관식 시험의 범위 조정 및 시행 시기 변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객관식과 주관식 이원화 방안에 대해, 해당 제안이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저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와 더불어 객관식 문항수

변호사 시험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는 시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화의 총론에 공감한다면 그 시험 시점 등 각론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객관식 문항의 수를 공법과 형사법은 각각 40에서 50으로, 민사법은 70에서 100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총 150문항에서 200문항으로 증가하는 것이며, 이와 비교해 미국에서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이 이미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의 목적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시험부담을 경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객관식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법학 기초 지식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 시험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는 발제자의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의 다양성과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의 총론에 공감한다면 그 시험 시점 등 각론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객관식 문항은 공법과 형사법 각각 40문항, 민사법은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50문항과 100문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현재 150문항에서 200문항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통합으로 통상 이틀 만에 모두 치르지만, 다수 주에서 시행되는 객관식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은 200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로스쿨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시험부담 경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철저히 평가하는 접근 방식은 단순히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넘어서,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평가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법률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존중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식 문항 수 확대가 어렵다면, 문제의 형식 변화 필요

현재 변호사 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형식이 과거의 사법시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로 법률 지식의 단순한 습득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객관식 문제가 단순히 특정 스킬을 익히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문제 형식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2026년에 주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형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형식에서는 다양한 법 분야에 걸쳐 특정 상황(Fact Pattern·사실 패턴)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MBE 문항이 단순한 법률 원칙의 이해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법률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응시자의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법률 실무에서 요구되는 사실 분석 능력과 법률 적용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사실 패턴을 사용한 문제는 실제 법률문제 해결 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며, 법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무에 잘 대비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패턴 (Fact Pattern) 예제 문제〉

〈예제1〉

상황: 김씨는 2023년 12월, 서울 소재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최신 전자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대기 중이던 김씨는 옆에 서 있던 이씨와 제품의 사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본 제품 리뷰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신뢰하여 같은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한 후, 이씨는 제품이 기대에 못 미치며, 김씨가 언급한 사양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문제: 이 상황에서 김씨에 대한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A) 김씨와 이씨 사이의 일상 대화 중 발생한 정보 교환은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B) 김씨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씨가 이를 근거로 구매 결정을 내린 것은 이씨의 개인적 판단에 속한다.
- C) 김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씨가 이 정보에 기반해 구매 결정을 내리고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D) 모든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제2〉

상황: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고위 공무원인 최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글들에서 이씨는 최씨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으며,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씨의 주장은 특정 내부 문서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이 문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이씨의 글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및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해당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발견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최씨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가 없었으며,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씨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 이 상황에서 이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A) 이씨는 공익을 위해 행동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이씨가 게시한 문서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 C) 공공 인물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씨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D) 이씨가 제공한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 공익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전문적 법률과목(선택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 필요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편중 문제점과 전문적 법률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감소 및 부재는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 전체 응시생 중 선택과목별 누적 비율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1.3%로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이고, 환경법 24.2%, 노동법 11.6%, 경제법 10.3%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법(6.9%), 조세법(2.5%), 지적재산권법(3.2%) 등은 미미했습니다. 이들 선택과목 중 '빅3' 과목의 비율이 77.1%에 달해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있으며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 같은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시험부담과 표준점수제의 유불리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로스쿨에서 전문화 과목 및 기초법학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 교육의 전문화, 다양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 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학점 이수로 변호사 시험의 응시 요건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조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선택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줄이고,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 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학습 내용의 중복을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변호사 시험에서의 학점 인정

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욱 심화하여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1~12회 변호사시험 전문분야(선택과목) 응시인원 및 응시자 대비 합격률

구 분		전 체	경제	국제 거래	국제	노동	조세	지적 재산권	환경
1회 (2012)	응 시 자 (비율)	1,665 (100)	228 (13.69)	413 (24.80)	94 (5.65)	516 (30.99)	59 (3.54)	82 (4.92)	273 (16.40)
	합 격 자 (합격률)	1,451 (87.15)	210 (92.11)	346 (83.78)	71 (75.53)	453 (87.79)	54 (91.53)	77 (93.90)	240 (87.91)
2회 (2013)	응 시 자 (비율)	2,046 (100)	285 (13.93)	805 (39.35)	59 (2.88)	405 (19.79)	45 (2.20)	88 (4.30)	359 (17.55)
	합 격 자 (합격률)	1,538 (75.17)	222 (77.89)	584 (72.55)	38 (64.41)	296 (73.09)	36 (80.00)	76 (86.36)	286 (79.67)
3회 (2014)	응 시 자 (비율)	2,292 (100)	225 (9.82)	1,032 (45.03)	63 (2.75)	359 (15.66)	33 (1.44)	61 (2.66)	519 (22.64)
	합 격 자 (합격률)	1,550 (67.63)	163 (72.44)	669 (64.83)	37 (58.73)	240 (66.85)	25 (75.76)	41 (67.21)	375 (72.25)
4회 (2015)	응 시 자 (비율)	2,561 (100)	192 (7.5)	1,116 (43.58)	64 (2.50)	319 (12.45)	49 (1.91)	52 (2.03)	769 (30.03)
	합 격 자 (합격률)	1,565 (61.10)	131 (68.22)	631 (56.54)	35 (54.68)	197 (61.75)	32 (65.3)	32 (61.53)	507 (65.92)
5회 (2016)	응 시 자 (비율)	2,864 (100)	199 (6.95)	1,240 (43.30)	95 (3.32)	405 (14.14)	57 (1.99)	73 (2.55)	795 (27.76)
	합 격 자 (합격률)	1,581 (55.20)	111 (55.78)	625 (50.40)	46 (48.42)	248 (61.23)	38 (66.67)	44 (60.27)	469 (58.99)
6회 (2017)	응 시 자 (비율)	3,110 (100)	270 (8.68)	1,397 (44.92)	181 (5.82)	439 (14.12)	71 (2.28)	80 (2.57)	672 (21.61)
	합 격 자 (합격률)	1,600 (51.45)	159 (58.89)	695 (49.75)	92 (50.83)	256 (58.31)	45 (63.38)	35 (43.75)	318 (47.32)
7회 (2018)	응 시 자 (비율)	3,240 (100)	309 (9.54)	1,404 (43.33)	241 (7.44)	415 (12.81)	81 (2.5)	95 (2.93)	695 (21.45)
	합 격 자 (합격률)	1,599 (49.35)	173 (55.99)	636 (45.3)	113 (46.89)	237 (57.11)	48 (59.26)	39 (41.05)	353 (50.79)
8회 (2019)	응 시 자 (비율)	3,330 (100)	378 (11.35)	1,493 (43.21)	236 (7.09)	333 (10.03)	108 (3.24)	114 (3.42)	721 (21.65)
	합 격 자 (합격률)	1,691 (50.78)	203 (53.70)	678 (47.12)	93 (39.41)	192 (57.49)	66 (61.11)	56 (49.12)	403 (55.89)
9회 (2020)	응 시 자 (비율)	3,316 (100)	427 (12.88)	1,224 (36.91)	303 (9.14)	242 (7.30)	99 (2.99)	115 (3.47)	906 (27.32)
	합 격 자 (합격률)	1,768 (53.32)	237 (55.50)	590 (48.20)	140 (303)	132 (54.55)	59 (59.60)	51 (44.35)	559 (61.70)

구 분		전 체	경제	국제 거래	국제	노동	조세	지적 재산권	환경
10회 (2021)	응 시 자 (비율)	3,156 (100)	386 (12.23)	1,147 (36.34)	298 (9.44)	203 (6.43)	103 (3.26)	121 (3.83)	898 (28.45)
	합 격 자 (합격률)	1,706 (54.06)	223 (57.77)	584 (50.92)	141 (47.32)	104 (51.23)	68 (66.02)	60 (49.59)	526 (58.57)
11회 (2022)	응 시 자 (비율)	3,197 (100)	336 (10.50)	1,291 (40.38)	348 (10.88)	169 (5.28)	87 (2.72)	98 (3.06)	868 (27.15)
	합 격 자 (합격률)	1,712 (54.24)	185 (55.05)	699 (54.14)	139 (39.94)	96 (56.80)	56 (64.36)	33 (33.67)	504 (58.06)
12회 (2023)	응 시 자 (비율)	3,255 (100)	258 (7.92)	1,559 (47.89)	382 (11.73)	138 (4.23)	71 (2.18)	103 (3.16)	744 (22.85)
	합 격 자 (합격률)	1,725 (52.99)	136 (52.71)	844 (54.13)	160 (41.88)	81 (58.69)	39 (54.92)	40 (38.83)	425 (57.12)
계	응 시 자 (비율)	34,032 (100)	3,493 (10.26)	14,067 (41.33)	2,364 (6.94)	3,944 (11.58)	863 (2.53)	1082 (3.17)	8,219 (24.15)
	합 격 자 (합격률)	19,486 (57.25)	2,153 (61.63)	7,581 (53.89)	1,105 (46.74)	2,532 (64.19)	566 (65.58)	584 (53.97)	4,965 (60.40)

4. ‘오탈자’를 위한 변호사 자격증 프로그램 도입 검토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시험으로 인한 ‘고시 낭인’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최대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이 ‘오탈자’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이 제한에 따른 오탈자 수는 약 1,5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 규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변호사 시험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탈자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 외에는 명확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삭제한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낭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로스쿨 교육과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8~10년의 세월은 개인과 사회에게 큰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오탈자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전통적인 변호사 시험 대신 ‘특별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시험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로,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오랜 기간 공부한 이른바 ‘오탈자들’은 충분한 법적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법학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서 불운하게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변호사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변호사나 법조 단체의 지도 아래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그 경험을 문서화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오탈자들에게 실제 법률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동시에 로스쿨 장기 준비생, 일명 ‘로스쿨 낭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넘어서, 실제 법률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조계 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 이러한 형태의 변호사 자격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APR 6”이라고 불리는 대안 경로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타주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실무 기반 평가를 포함한 변호사 자격시험의 대안 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올해 5월부터 바 시험을 치지 않고 변호사가 될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감독하에서 675시간 일하면 시험을 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도 전통적인 변호사 시험 대신에 포트폴리오 변호사 시험(Portfolio Bar Examination, PB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감독하에 700~1,000시간의 법률 실무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제 2주제〉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

권건보 교수님의 발제문은 변호사 시험의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CBT 도입이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험 응시 및 채점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CBT(컴퓨터 기반 테스트) 도입은 시험 절차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에 따른 논술형 답안의 채점 방식 변화 및 합격자 발표 시기의 조정, 점수 상승에 따른 합격자 수 증원 가능성 등은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서, CBT 도입에 따른 발표 시기 조정과 합격자 수 증원 등을 논의해보겠습니다.

1. CBT 도입의 기대효과

- 공정성의 제고: CBT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기대효과 중 하나는 시험의 공정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발제자께서 언급했듯이 CBT는 필기 속도나 필체의 식별 정도 등에 따라 시험 성적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 등의 장애가 있는 수험생 등에게 보다 평등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점 기간의 단축 가능성: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도입으로 답안 제출 및 채점이 디지털 화됨에 따라, 변호사 시험의 채점 기간이 크게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수험생들의 불안감과 대기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시험 후 발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0일에 달하는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수와 유사한 규모의 미국 뉴욕주의 2월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응시자 수가 3천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채점 기간이 우리의 약 절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변호사시험도 3월 중순 발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CBT 도입으로 채점 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합격자 발표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더욱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의 2월 시험 채점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시작일	종료일
시험 시행	2월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
초기 채점 및 검토	3월 첫 주	3월 말
성적 산출 및 검증	4월 중순	4월 중순
성적 발표	4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이 표는 2월에 시행된 미국 변호사시험의 채점과 성적 발표까지의 주요 단계와 기간을 요약한 것입니다.

- 시험의 질적 관리: CBT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시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험 방식에 적합한 문제 출제

방법과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CBT가 단순한 형식의 변경을 넘어서 교육과 평가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 CBT 방식 도입 영향으로 합격자 수를 증원할 수 있는지

CBT 도입은 수험생들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점수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논술형 시험에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양질의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더욱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CBT 방식의 도입 전후의 점수를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논술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으로 수험생들의 점수가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CBT 방식 도입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 사이의 상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CBT 도입 후 일부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합격 기준 점수의 상향 조정 또는 합격자 수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질적 관리와 합격자 수의 적정성 유지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BT 도입은 변호사 시험의 채점 방식과 합격자 발표 시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험생들이 더 높은 품질의 답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전반적인 시험 점수와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험 운영 기관의 관리와 정책, 그리고 수험생들의 적응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CBT 도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시험의 품질 관리와 수험생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수험생들이 새로운 시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CBT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격자 수 조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